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62호

2023. 1. 2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0호 2023년 삼척 지적재조사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3-1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90호 신조 재등록 및 폐기 공고————— 5
- 삼척시 공고 제2023-93호 20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7
- 삼척시 공고 제2023-9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8
- 삼척시 공고 제2023-110호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 2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 - 10호

2023년 삼척시 지적재조사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삼척시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수행할 책임수행기관과의 재조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삼척시장

1. 책임수행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명칭 : 교가2지구 외 6개 지구
3.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사업지구	위치	필지수(개)	면적(㎡)
총 계	7개지구	2,241	1,327천㎡
교가2지구	근덕면 교가리 388-3번지 일원	176	67,117.5㎡
교가3지구	근덕면 교가리 162-1번지 일원	579	366,256.4㎡
교가4지구	근덕면 교가리 166-1번지 일원	566	308,995.4㎡
하거노2지구	미로면 하거노리 96-3번지 일원	271	143,564.3㎡
고사1지구	도계읍 고사리 3번지 일원	367	347,749.4㎡
도계4지구	도계읍 도계리 309-2번지 일원	66	44,208.1㎡
흥전산도마을1지구	도계읍 흥전리 66-1번지 일원	216	49,619㎡

4. 책임수행기관 위탁사항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
5. 참고사항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부서 (033-570-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삼척시 고시 제2023-1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2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591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90-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591	20230120	신규 부여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도경동 222-1	강원도 삼척시 도경북길 205 (도경동)	20230120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 복합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275-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안길 120	20230120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 복합활용
4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죽마읍리 114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죽마읍길 191	20230120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3-90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삼척시 공인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삼척시장

1. 공인의 재등록 사유
 - 공인 규격 조건 미충족에 따른 재등록
2.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6일
3. 재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재등록 공인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분임재무관인	2×2 (정방형)		공인 규격 조건 미충족에 따른 재등록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4. 공인의 폐기 사유

- 공인 규격 조건 미충족에 따른 폐기

5.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16일

6.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폐기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분임재무관인	2×2 (정방형)		공인 규격 조건 미충족에 따른 폐기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공고 제2023 - 93호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강원도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17일

삼척시장

1. 사업개요

○ 모집인원(삼척시) : 60명

※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지원대상 ※ '19 ~ '22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자격 없음(생애 1회 지원)

- 삼척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 만 40세 이상 ~ 만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1963. 1. 26.~ 1983. 1. 25.)

-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 1차 모집 후 예산 추가 확보 시, 기 참여자 대상으로 「재참여 모집 공고」 별도 안내(예정)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창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 시 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서비스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취·창업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포인트 배정→ 온라인(복지몰), 오프라인(체크카드 사용 후 현금)

※ 체크카드는 통장에 현금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사후에 현금 처리

- (1개월)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2~6개월)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 '23. 1. 25.(수) 09:00 ~ 2. 15.(수) 23:59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 회원가입 → 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마이페이지-인재정보관리-내 인재정보 등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파일로 첨부(지원정책-지원사업신청-여성구직활동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

※ 서면 접수는 하지 않음

○ 선정방법 : 정량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100점) :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2. 신청자격 ※ 생애 1회 지원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모집시작일 기준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모집 시작일('23.1.25.) 현재 삼척시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주민등록번호 기준)
 - ※ 1963. 1. 26. ~ 1983. 1. 25.
- 미취업 상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신청일 기준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되었거나 남은 경우,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모집시작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자납부액 기준)
 - 모집시작일 전월('22년 12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고,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함

①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44,272	73,637	95,181	115,665	135,693	153,999
	지역	13,337	24,221	26,610	55,694	89,972	116,161
	혼합	-	74,505	95,710	116,821	137,254	155,838
소득기준(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11,677	183,861	237,913	291,898	346,067	403,785
	지역	50,654	142,142	206,359	273,699	335,569	402,840
	혼합	-	186,476	242,216	299,947	359,887	434,962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수 기준(붙임 1 참조)

(가구원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 상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19~'22년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수혜자
-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단, 신청일 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되었거나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폐업한 경우 신청가능)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고용부, 타 시도)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 30시간 이상) 등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희망사회프로젝트, 희망챌린저 사업,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
※ 동시지원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 한 참여자는 지원 가능

3. 제출서류(필수서류) (붙임 3 참조)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시작일(1.25.)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주소 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 주소 변동이력(5년 이상) 확인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세대 구성 및 구성원 전부,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④ '22. 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두(자녀제외)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 ⑤ 고용보험 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근로기간을 모집시작일 기준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
 - 이력이 없는 경우, 온라인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분류)
 - ※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남았거나 1개월 미만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자격 확인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본 상 주소는 다르지만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제출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1) *온라인 첨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모집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 첨부(JPG, PDF 파일가능, 여러 건은 압축)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

4. 선정기준

○ 정량평가(100점)

항 목	평 가 방 법
가구소득 (50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및 150% 판정기준 대비 모집시작일 전월('22.12월)분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미취업기간 (40점)	고용보험 상실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최고점수)
거주기간 (10점)	강원도 최종 전입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점수	50점	48점	46점	44점	42점	40점	38점	36점	34점	
가구 소득	60% 초과 70% 이하	71%- 80%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130%	131- 140%	141- 150%	
점수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미취업 기 간	5년 이상	4.5년 이상	4년 이상	3.5년 이상	3년 이상	2.5년 이상	2년 이상	1.5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점수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거주 기간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건강보험 가구소득 산정표

(단위 : %, 원, 월, 가구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60	직장	44,272	73,637	95,181	115,665	135,693	153,999	173,332	191,845	212,442	230,142
	지역	13,337	24,221	26,610	55,694	89,972	116,161	128,505	151,504	175,189	196,236
	혼합	-	74,505	95,710	116,821	137,254	155,838	175,359	194,564	215,567	233,952
70	직장	51,773	86,559	110,461	134,375	157,684	181,294	203,267	226,361	246,555	272,226
	지역	15,559	28,258	50,654	87,266	121,134	139,405	164,211	191,639	217,566	249,281
	혼합	-	86,923	111,677	135,693	159,423	183,861	206,304	230,142	250,789	278,492
80	직장	59,169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30,142	255,791	284,769	309,670
	지역	17,782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264,991	293,801
	혼합	-	99,340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291,898	320,126
90	직장	66,565	110,461	141,601	173,332	203,267	233,952	261,015	291,898	320,126	346,067
	지역	20,005	50,654	98,703	128,505	164,211	201,458	235,637	273,699	305,817	335,569
	혼합	-	111,677	142,342	175,359	206,304	237,913	266,386	299,947	332,208	359,887
100	직장	73,962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320,126	359,887	403,785
	지역	22,228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305,817	354,030	402,840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332,208	379,133	434,962
110	직장	81,358	135,693	173,332	212,442	250,789	284,769	320,126	359,887	403,785	434,962
	지역	24,450	89,972	128,505	175,189	223,186	264,991	305,817	354,030	402,840	436,179
	혼합	-	137,254	175,359	215,567	255,791	291,898	332,208	379,133	434,962	476,875
120	직장	88,754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476,875
	지역	26,673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481,248
	혼합	-	148,789	191,845	233,952	278,492	320,126	359,887	434,962	476,875	521,613
130	직장	96,150	159,423	206,304	250,789	291,898	346,067	379,133	434,962	476,875	521,613
	지역	28,896	122,890	167,633	223,186	273,699	335,569	375,956	436,179	481,248	527,523
	혼합	-	161,135	209,382	255,791	299,947	359,887	403,785	476,875	521,613	563,270
140	직장	103,263	173,332	222,624	272,226	320,126	359,887	403,785	476,875	521,613	563,270
	지역	39,753	128,505	187,378	249,281	305,817	354,030	402,840	481,248	527,523	570,140
	혼합	-	175,359	226,361	278,492	332,208	379,133	434,962	521,613	563,270	625,329
150	직장	111,677	183,861	237,913	291,898	346,067	403,785	434,962	521,613	563,270	625,329
	지역	50,654	142,142	206,359	273,699	335,569	402,840	436,179	527,523	570,140	628,210
	혼합	-	186,476	242,216	299,947	359,887	434,962	476,875	563,270	625,329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대비

모집시작일 전월 분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

※ 1인가구 120%이하 및 2인가구 70%이하는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에 기준금액이 없어, 일정비율로 산정함(1인가구 중위소득 130%구간×소득비중, 2인가구 중위소득 80%×소득비중)

○ 최종선정 :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및 모집인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최종 선발

5.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 지원 대상자 발표

- 일시 : '23. 2. 27.(월) (예정) * 선발·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시군 홈페이지 공고, 문자 발송 등

○ 예비교육

- 기간 : '23. 3. 2.(목) ~ 3. 10.(금)
- 방법 : 포인트 사용시스템(<https://gwwoman.ezwe1.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교육 영상 및 업무 매뉴얼) * 필요시 현장교육 실시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환급신청,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안내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원칙이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여성구직활동 지원금 참여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해당 시군 여성부서 및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붙임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1] * 온라인 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시 작성하여 파일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적격여부 판단,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소득기준 판단, 정보 전달 등
-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제공 항목		수집·이용·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 및 거주지 확인, 지원금 지급 (이지웰, 강원일자리정보망, 농협은행)	사업 종료시 까지
	휴대전화, 이메일	정보 전달, 지원금 지급(이지웰, 강원일자리정보망, 농협은행)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 이력	취업자 및 실업자, 생계급여자 판단	
	중앙 및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 이력	중복 수혜 여부 판단	
	사업자등록증 확인, 부가가치세과세증명	폐업 또는 창업여부, 소득 등 확인	
소득 기준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소득 기준 판단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 수집방법 : 일모아시스템, 강원일자리정보망 및 e새일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관리
- 여성구직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수집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 신청·선정·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은 아래와 같이 동의/미동의 합니다.

연번	관계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서명
1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가구원 작성 범위 : 등본상의 신청인 본인, 배우자, 자녀
 *희망 시 등본상의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 (가구원수) 등본상의 본인, 배우자, 자녀
 - (원칙) 가구원 수는 본인, 배우자+자녀 수로 하고, "본인+배우자"의 소득 확인
 - (선택) 등본 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 (포함 시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모두 추가)
-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은 모집 시작일 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을 통해 확인
 - ※ 등본상 주소가 다르지만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포함여부 증빙, 생활비 등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확인 사례 〉

- ①(기본) 등본 상 본인, 배우자 + 자녀수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확인
 - ※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②(부모 희망합산 시) 등본 상 본인, 배우자, 부, 모 + 자녀수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위의 경우에서, 등본 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2】 구비서류 발급 방법 ※ 온·오프라인 서류발급 가능

구비서류	발급방법	비고
참여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스템 입력(https://job.gwd.go.kr)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필수제출
주민등록 등·초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국적 미취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발급	필수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동인증서 필요) · The건강보험 모바일 어플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용 : 1577-1000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필수제출
고용보험 자격(상용)이력 내역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 표시)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필수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해당자에 한함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본인·부·모·배우자 등) 방문 필요

【붙임 3】 담당부서 연락처 < 새일센터, 시군청 여성부서 >

■ 새일센터(9개소)

센터명	전화
춘천새일센터	070-4048-6964 070-4048-6328
원주새일센터	033-741-4413~4
강릉새일센터	070-4048-7191~2
동해새일센터	033-535-6077
속초새일센터	033-633-9564
삼척새일센터	033-570-4085
영월새일센터	033-370-1333
정선새일센터	033-560-4133
양양새일센터	033-670-2890~3

■ 시·군청(18개소)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춘천시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033-250-3108
원주시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033-737-2734
강릉시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033-640-5768
동해시	동해시청 가족과	033-530-2102
태백시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3110/2073
속초시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033-639-2442
삼척시	삼척시청 평생교육과	033-570-4082
홍천군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3
횡성군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033-340-2184
영월군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1341
평창군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033-330-2310
정선군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033-560-2319
철원군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33-450-4241
화천군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033-440-2342/2414
양구군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033-480-2491
인제군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033-460-2216
고성군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662
양양군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033-670-1757

삼척시 공고 제2023-9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2. 1. 17. ~ 2023. 2. 1.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3. 2. 2.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정석○
	주소 (대장상주소)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 77번지 연면적(45.6㎡), 목조,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7.

삼 척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공고 제 2023-110호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7조 및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1. 공고기간 : 2023. 1. 19. ~ 2023. 1. 29. (10일간)
2. 보호유기동물에 관한 내역 및 사진 : 「붙임참조」
3. 소유자(관리자) 유기동물 인수절차
 - 해당 유기동물의 소유(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 때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 애호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한다.(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소유(관리)자에게 해당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 노임, 관리인수당, 치료비, 사료비 등의 해당 경비에 상응하는 산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삼척시동물보호센터 ☎ 033) 571-2610

[붙임]

㉠ 보호동물에 관한 내역 ㉠

관리번호	속종	성별	연령및체중 (세/kg)	포획장소	포획일자	유기동물 보호장소	특징 및 건강상태
2023-00010	묘	수	0/1	임원 비화항 앞	2023.01.18	삼척시동물보호센터	털색 : 흰색,검정색 건강 : 콧물
2023-00011	묘	암	0/1	임원 비화항 앞	2023.01.18	삼척시동물보호센터	털색 : 연한 고등어 건강 : 건강함
2023-00012	개	암	7/4	미로면 사둔리	2023.01.19	삼척시동물보호센터	털색 : 검정색 건강 : 배에 흑인음

㉡ 보호동물 사진 ㉡

	
2023-00010	2023-00011
	
2023-00012	